기분좋은 변화,
활짝웃는 아산

발 행 인 : 아 산 시 장
편집 · 보급 : 홍 보 실
전 화 : ☎540-2811
http://www.asan.go.kr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1626)
우)336-701

제686호 2012.11. 26.(월)

아산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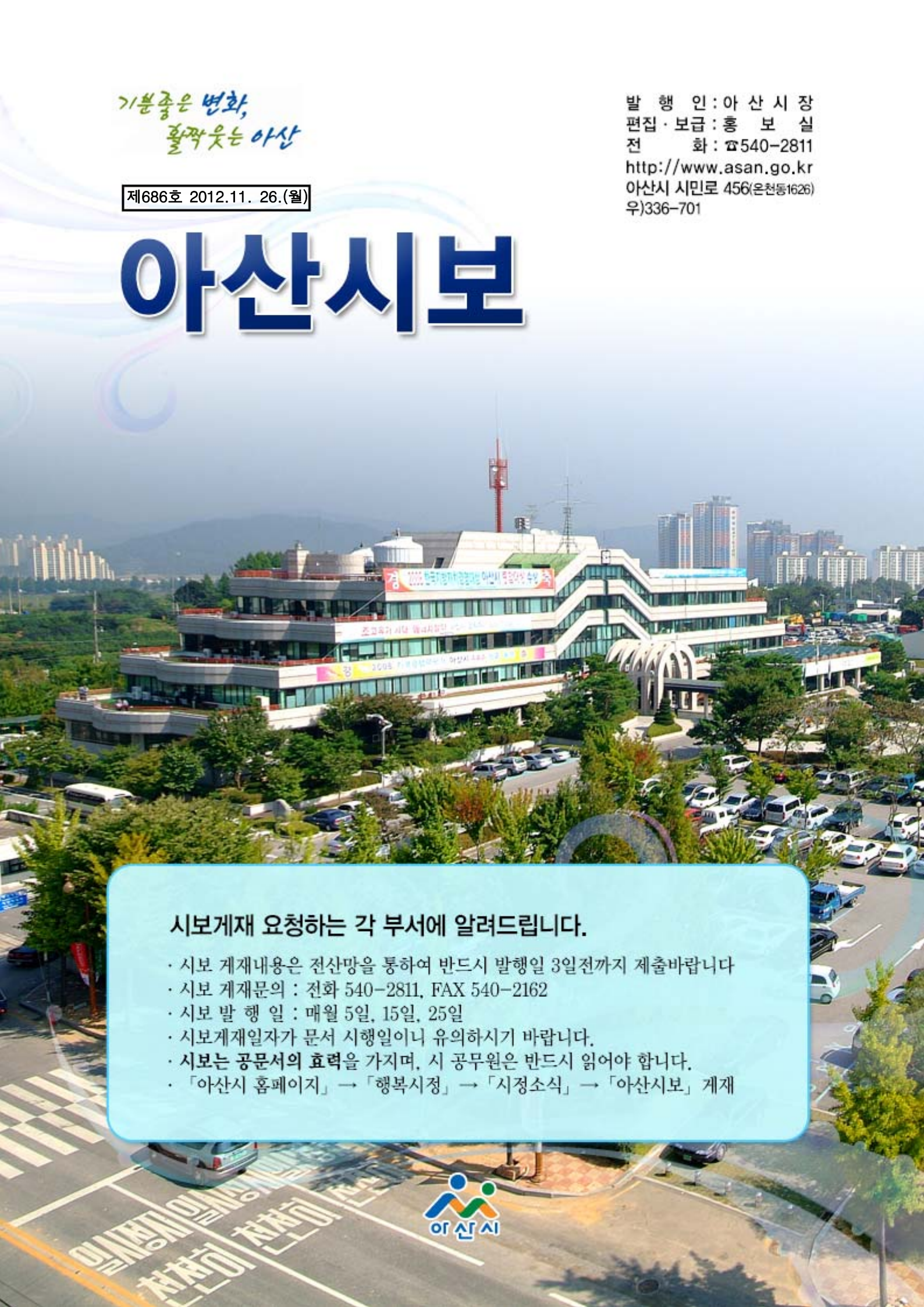

시보게재 요청하는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 시보 게재내용은 전산망을 통하여 반드시 발행일 3일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시보 게재문의 : 전화 540-2811, FAX 540-2162
- 시보 발 행 일 : 매월 5일, 15일, 25일
- 시보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아산시 홈페이지」 → 「행복시정」 → 「시정소식」 → 「아산시보」 게재

아 산 시

【 게 재 순 서 】

입 법 예 고

○ 제2012-1565호(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고 시

○ 제2012-230호(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43

○ 제2012-231호(아산득산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8

○ 제2012-232호(동화지구 전원마을 시행계획 변경 승인)---------- 50

○ 제2012-233호(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52

○ 제2012-235호(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53

○ 제2012-238호(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54

공 고

○ 제2012-1526호(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56

○ 제2012-1530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열람 공고)----- 58

○ 제2012-1531호(탕정지구 중도위 조건의결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토지등의 출입공고)---------- 59

○ 제2012-1537호(도로지정 공고)---------- 61

○ 제2012-1542호(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고)-- 62

○ 제2012-1549호(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남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65

○ 제2012-1552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등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66

기 타

○ 충청남도 공고 제2012-1118호(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68

아산시 공고 제2012 - 1565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2013년 조직개편을 위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에 맞추어

○ 정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순증 없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구·정원·사무를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상의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課 분장 사무를 조정함

○ 붙임 참고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53조제1항 관련)

○ 기관별 정원 변동

- 총정원 : 1,154명(변동없음)
- 본청 : 600명 → 587명(13명 감)
- 의회 : 19명(변동없음)
- 직속기관 : 186명 → 199명(13명 증)
- 사업소 : 95명(변동없음)
- 읍면동 : 254명(변동없음)

○ 직급별·직렬별 정원책정

- 별표4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표 참고

4.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 제출 기간내에 아산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2012. 11. 30까지
- 의견 제출 방법

- 예고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처 : 아산시청(자치행정과, 인사팀)
- 주소: (우)336-701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 전화: (041)540-2235 팩스: 041-540-2349

붙 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홍보실장은 시장을, 기획예산담당관・정책담당관・감사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소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운영세칙) 이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본청

제1절 보좌기관

제4조(홍보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공보·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정·도정 홍보
3. 아산뉴스 편집·발행 및 시보 발간
4. 시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 관련 실과 협의·지원
5. 언론사 보도 자료 제공 및 분석 관리
6. 언론매체·언론인 관리 및 방송취재 협조
7. 인터넷방송실 운영
8. 시정기록 유지
9. 인터넷・미디어 등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10. 아산시 포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1. 각종 문화・홍보 컨텐츠 제작 관리
12. 시정 홍보용 시설물 관리

제5조(기획예산담당관)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3. 각종 지시사항 관한 종합관리
4.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사항
5.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시행
6. 투·융자사업 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7. 시의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의 종합 관리 및 지도·지원
10.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열린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제6조(정책담당관) ① 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자료 수집·정보분석·우수정책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2. 부서간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정책전문가 관리에 관한 사항
4.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관리
6. 시정의 종합 심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융·복합 업무 정책 총괄
8. 2016년 전국체육대회 범 시민 지원사업 정책 총괄
9. 인구30만시 만들기, 범시민스마일 운동 등 정책 총괄 방향 설정
10. 참여마을만들기, 살기좋은만들기 등 주민참여사업 정책 총괄
11.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자료수집·발간
12. 기본 통계자료 관리
13.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시정 현안사항 종합 기획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감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3.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4. 공직자 병역사항 관리
5. 공무원 비위 조사 및 공직기강 점검
6. 자체 행정·회계 종합감사·부분감사 및 정책감사·일상감사·특별감사 추진
7. 기술분야 감사·대형공사 점검
8. 특명사항·지시사항 등 조사 처리
9. 예산절감을 위한 재정·설계심사
10. 시민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제2절 자치행정국

제8조(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세무과장・회계과장・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공공시설과장・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 조정
2.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3. 각종 의전행사 주관 및 행사의 협조 조정
4. 행정능률향상 및 문서·보안·사무관리·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 공무원・근로자 단체,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투표 업무
8. 지역동향 및 여론 파악
9.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 사업소 평가 및 지도·감독
11.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 및 대외협력
12. 자생적 주민자치 지원 및 활성화
13.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4. 사회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증진
15. 새마을 교육 및 단체관리
1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업무

17. 자원 봉사에 관한 사항
18. 행정기구 및 정원·인사 관리
19. 공무원 교육·국내외 연수 업무
20. 공무원 임면·징계·표창·소청 관리
21. 특별사법경찰업무
22. 아산시기록관 관련 업무
23.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24. 그 밖에 다른 국 및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정 운영의 종합 기획·조정
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
3. 지방세원의 조사
4. 세입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 배정
6. 지방세정 종합 전산망 관리
7. 세외수입 과징 총괄
8.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9. 수납대행 은행 지정 및 관리
10. 납세보호 및 편의시책관련 사항
11. 지방세관련 압류 및 해제
12.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
13.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제11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비·도비·시비의 세출예산관리 및 출납·보관
2. 국·도비 및 시비의 집행 결산
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4.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5.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시금고 운영 및 관리 감독
7. 자산·부채 실사 및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 운영
8.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의 구매·조달·수불·수선
9.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심사·점검
10.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11.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제12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 기획 및 통제
2. 행정안내 및 민원상담
3.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4. 주민등록·인감업무 총괄 관리
5. 민원서류의 접수 및 통제
6. 제증명 발급에 관한 소관사무
7. 외국인 전출입 관리
8. 여권사무 처리
9. 민원처리실태 평가 및 시책보완 개선
10.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점검・검사에 관한 사항

제13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아산 정보화추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마을 조성
3. 시민정보화 교육 및 학습개발에 관한 사항
4. 전 마을 고향사랑 넷 홈페이지 구축
5. 유비쿼터스 통합운영센터 운영
6.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

7. 행정정보의 공유화 기본계획 수립 운영
8.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9. 각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의 전산프로그램 총괄 관리 및 정보화 지원
10. 업무별 전산시스템, 전산화 사업 추진
11. 인터넷 행정정보망(LAN, WAN)에 관한 사항
12. 유·무선통신망 기획 및 설계
13. 유·무선통신보안 업무
14. 민원콜센터 운영
15. 전화교환업무 및 청내 방송

제14조(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청사의 관리
2. 공공시설물 신·증축 업무 추진 및 지원
3. 공공시설물 및 공공적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운영
4.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관리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관리
3.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4.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6. 지적공부정리 및 보존·관리
7. 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관리
8. 지적 불일치 토지 정리
9. 토지이동민원 처리
10. 토지표시 변경 촉탁 등기 업무

11. 부동산실명제 업무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추진 및 D/B구축 관련 업무
13.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관리 운영
14. 지적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5. 지리정보(GIS)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제3절 교육복지국

제16조(교육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 과장・경로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문화관광과장・체육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7조(교육도시과) 교육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교육정책 수립 및 조정
3.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기관 지원
5. 국제화 교육특구와 관련된 사항
6. 청소년 육성 및 지원
7. 청소년 선도 및 지도
8. 청소년 문화진흥을 위한 사항
9.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4.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관한 업무
5. 보훈관련단체의 관리·지원
6. 재해 비축물자의 관리
7.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8.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9.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10.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역사회 복지협력자원의 발굴・조정・연계
12. 사할린 동포 지원
13. 사회복지 공동모금·적십자회비 및 불우이웃돕기 업무 총괄
14. 부랑인 및 행려자에 관한 사항

제19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의 권익 증진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건강가정 육성
5. 다문화가정 지원
6.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7. 아산시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 총괄
8.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9. 아동보호 및 아동시설 관리
10.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
11.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

제20조(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로 및 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및 추진
2.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관리
4.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
5. 장묘문화보급 등 장묘관리
6. 장애인 복지 향상
7. 장애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제21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육성
2.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육성 지원
4. 문화기반시설의 조성·운영·지원·관리
5. 관광자원의 발굴·개발 및 관광 진흥 업무
6. 관광지 관리
7. 온천개발 및 온천관광 육성
8. 문화재 보호·관리・활용
9. 외암민속마을 및 외암민속관 운영·관리
10. 공연장, 영화・비디오물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 출판문화사업, 인쇄문화사업 관련 업무 총괄

제22조(체육육성과) 체육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도민체전·시민체전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유치·지원
2. 생활체육 진흥
3.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4. 직장체육팀 운영
5. 각종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 및 관리
6. 체육시설의 확충 및 체육공원 관리

7.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의 등록 신고처리 및 지도관리
8. 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
9. 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10. 이순신실내체육관, 빙상장 운영 및 관리

제4절 경제환경국

제23조(경제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 하고, 경제과장·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 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 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경제과) 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조정
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
3. 시장관리 및 물가안정대책수립 시행
4.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5. 과학진흥 업무
6. 노동조합 및 노사안정에 관한 사항
7. 고용증진·직업훈련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업무
8. 사회적기업, 마을형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9. 전통시장 활성화
10. 대형유통업 등록 관리
11. 에너지 관리·보급

12. 대체에너지 확대・보급
13. 광업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센터 운영
15.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육성지원
2. 기업유치 및 기업 애로사항 처리 지원
3. 공장설립(신설·증설·변경) 등록 및 창업 승인
4. 기업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통상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
6. 국내외 투자유치
7.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분양・관리

제26조(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조정
2.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
4. 수렵면허 발급·포획허가 및 야생동·식물 보호
5.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
6. 환경보전 관리 및 지도·단속
7.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및 토양오염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원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9.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10. 오수, 공중화장실,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

제27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대책 수립 시행

2. 폐기물처리의 종합조정
3. 도심지 가로 청소 및 환경미화원 관리
4.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5. 건축폐기물 처리 지도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7.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및 폐자원 모으기 관련 업무
8.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계획 수립 시행
10.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 처리관련 업무
11.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소 관리
12. 매립장 관리 및 정비

제28조(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보호·산림자원・공원녹지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조림·육림에 관한 사항
3. 산지전용허가 업무
4. 산림 내 토석·토사 채취에 관한 사항
5. 임목벌채허가 등 목재 수급에 관한 사항
6. 산림 병충해 방제 업무
7. 임도·등산로 개설 및 관리
8. 산림조합 등 임업단체 육성 지원
9. 보호수 및 천연 보호림 관리
10. 공원개발사업 종합 추진
11. 가로수 등의 식재·관리
12. 공원조성 및 관리
13. 도시공간 녹화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4. 양묘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행
4. 자동차운수사업의 인·허가 및 등록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
6. 자동차터미널 인·허가 및 지도
7.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 책정
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및 노선조정
9.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10. 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등의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1.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12.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해소
14. 주차장에 관한 사항
15. 교통정보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운영
16. 자동차관리사업·건설기계사업에 관한사항
17. 철도·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절 건설도시국

제30조(건설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 장·도시계획과장·재난안전과장·도로과장·건축과장·주택과장·개발정책과장·신도시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건설과)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2. 건설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4. 농촌 정주권개발
5. 농업용수개발·경지정리 및 농업기반조성
6. 국유재산관리(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행정재산)
7. 그 밖에 국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2.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업무
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4. 도시계획 통계
5. 도시·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6. 제1종(도시지역)·제2종(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7. 지구단위계획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8.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협의회 운영
9.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제33조(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방재종합계획 수립 시행
2.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
3. 재난대비 자원·물자·장비파악 및 재난 단계·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4.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업무
5.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대상시설, 시특법 대상시설 등 안전점검

6. 유선 및 유선장 관리
7. 재해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8. 수방자재 확보 관리 및 수방단 조직 운영, 수문관리
9. 하천·소하천 정비
10.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11. 하천 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12.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13. 민방위 시설 및 인력자원 관리
14.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업무 추진

제34조(도로과)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3. 시군도·농촌도로의 개설
4. 고속도로·국도·지방도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협조 사항
5. 국도체불용지,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보상
6. 도시계획도로 개설
7.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도비 보조사업 관련업무
8. 도로개설 구역내 가로등 신설
9. 대단위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10.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
11. 철도관련 업무
12.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관리 및 도로 방재대책 추진
13. 교량, 육교, 지하도 개설 및 유지관리
14. 접도구역 관리 및 과적차량 단속
1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16. 기동민원처리반 운영 및 생활민원처리
17. 노점상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8. 노점상 관리
19.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제35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 종합 건실화 대책 추진
2. 건축물대장 정리 및 보존 관리
3.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4. 수해주택에 관한 사항
5. 건축사 수임사무 점검
6. 건축허가·신고처리 및 사용승인
7. 위법·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8.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9.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용
10. 건축디자인 개선 사업 추진
11. 공공건축물 기본디자인 개발사업 추진
12. 가로환경개선계획 및 디자인 개발
13.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

제36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및 사후관리
2. 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공동주택 관리
3.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4.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5. 주택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6.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7.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
8.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9.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제37조(개발정책과) 개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
2. 역세권개발·택지개발·공영개발사업 시행
3. 대형투자가 유치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4. 그 밖의 도시개발에 관련된 소관 사무

제38조(신도시지원과) 신도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도시개발계획의 검토 및 조정
2. 신도시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력·지원
3. 신도시개발지역내 주민이주대책 추진
4. 신도시개발지역내 각종 보상업무 지원
5. 신도시개발지역내 관련 민원의 조정 및 협의
6. 신도시개발지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7. 대규모시설 및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
8. 경찰대학 이전 지원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

제39조(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한다.

제40조(하부조직)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 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한다.

제41조(사무분장) 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소 내 인사·문서·보안·관인·예산·회계·물품·차량 및 재산관리
3.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5.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
6. 방역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7. 의·약 업무에 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8. 의료인 및 약업사 관리에 관한 사항
9. 환자의(일반·치과·한방) 진료 및 치료
10. 진료장비 및 기자재 관리
11.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 업무
1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 감독
13.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 감독
14. 그 밖의 소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증진, 노인보건 업무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양개선사업 업무
4. 구강보건센터 운영
5. 모자보건과 가족계획·가족보건 업무
6.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7. 정신보건업무(정신장애인, 치매, 아동청소년정신보건)
8.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9.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③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식품위생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시행
2. 공중・식품위생업소・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의 관리 및 지도단속
3. 심야 퇴폐·변태 및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
4. 유통업소(대형할인점, 슈퍼 등)의 식품유통 지도
5. 무허가 위생업소 지도단속
6. 부정불량식품·국민건강 위해식품 지도단속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42조(소장 및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3(하부조직)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유통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4조(사무분장) ① 농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2. 소 내 인사·문서·보안·관인· 예산·회계·물품·차량 및 재산관리
3.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 업무
4.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5. 농어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8. 식량·특작·채소·과수·화훼의 생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소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수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종별 경쟁력 강화 사업
3. 축산업 등록 및 관리
4.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5. 가축방역 및 가축위생에 관한 사항
6. 공수의·수의사 및 동물의약품 관련 업무
7. 유기동물 보호관련 업무
8.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9.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기술 지도
10.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1. 축산농가 교육
12. 수산업 진흥 및 수산자원 관리
13. 내수면 어업 및 양식장 관련 업무
14. 낚시터 개발 및 관리
15. 수산물 유통 관리

16.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

③ 유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2. 아산맑은쌀 브랜드육성·판매촉진
3.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관리
4. 농특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직거래장터에 관한 사항
5. 농촌관광, 도농교류 활성화
6. 관광농원 개발 및 육성
7. 그 밖에 유통구조 개선 관련 사업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평가
2. 농업경영에 관한 조사·분석 및 경영개선 기술지도
3.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사항
4.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농업인 육성
5. 농업인 교육훈련
6. 농촌 생활개선
7. 귀농 육성·지원
8. 지구지소 운영
9. 농업기계 수리 및 기술지도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 재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3. 병충해 예찰실 운영 및 방제 기술지도
4. 환경농업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5. 농업기상 관측실 운영 및 기상재해 예방 및 사후 지도
6. 종합검정실 운영
7.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8. 신기술 실증시험 및 현장애로 기술개발

9. 시험포장 관리
10. 주말농장 운영
11. 원예·특작기술 지도
12. 수출농업 기술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제45조(지구지소의 설치)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업인 현장 지도를 위하여 지구지소를 둔다.
② 지구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사업소

제46조(소장·관장 및 과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관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47조(수도사업소) ① 상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 행정의 종합 조정
2.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3.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4. 상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5. 상수도 계량기 검침, 요금부과 및 징수
6. 상수도시설 확장계획 수립 및 신설공사
7. 급수종합대책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 및 시행
8. 유수율 및 누수방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
10. 먹는물 및 약수터 관리
11. 지하수 개발 및 관리
12. 상수도 원수·정수 수질검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13. 취수・정수・배수・가압장 유지관리
14. 상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15. 그 밖에 소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3. 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공시
4.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
5.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관리
6.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 증설 및 개선사업
7.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8.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9. 하수도・하수관거 정비
10.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 및 지도점검
11. 하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12. 배수설비 신고 및 준공, 배수설비대행업체 관리

제48조(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학습 축제 운영
5. 아산 시민아카데미 및 사이버 시민대학 운영
6.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관리
7. 평생학습관(본관, 별관) 및 야외음악당 운영 및 관리

제49조(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문화 기반 확충
3. 공립도서관 설립 및 사립도서관 등록·관리
4.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
5. 이동도서관 운영
6. 도서 및 향토자료 서적류의 수집 및 정비 보관
7. 시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열람·대출·정보 제공

제50조(영인산휴양림사업소)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인산휴양림 조성 및 운영
2. 휴양림 썰매장 및 물놀이터 운영
3. 휴양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산림휴양문화 확산 계획수립 및 시행
5. 수목원 관리 및 운영
6. 산림자연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제51조(신정호수공원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정호수공원 운영 및 조성
2. 신정호수공원 체육·편의시설 관리
3. 신정호수공원 불법행위 및 시설물 지도
4. 신정호수공원 야외수영장 관리 및 운영
5. 남산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6. 남산공원 유지관리

제5장 읍·면·동

제52조(읍·면·동장 및 부읍장·부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 조에 따라 읍·면·동에 두는 읍장·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부읍장·부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53조(직급별·직렬별 정원) ① 아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정원 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에 상응하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4조(정원배정) 시 본청, 시의회사무국 및 소속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에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업기술센터의 지구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45조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위 치
동부지구지소	배방읍·송악면·동지역	관할구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내
중부지구지소	염치읍·영인면·인주면	관할구역 읍·면사무소 내
북부지구지소	탕정면·음봉면·둔포면	관할구역 면사무소 내
서부지구지소	선장면·도고면·신창면	관할구역 면사무소 내

【별표 2】

사업소의 소장·관장 및 과장의 직급(제46조 관련)

사업소명	소장·관장	과 장		비고
		직 위	직 급	
수도사업소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상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하수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평생학습관	지방행정사무관	-	-	
시립도서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	-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별표 3】

읍장·면장·동장의 직급(제52조 관련)

읍·면·동명	읍장·면장·동장	비 고
염 치 읍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배 방 읍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송 악 면	지방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사무관	
탕 정 면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음 봉 면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둔 포 면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사무관	
영 인 면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인 주 면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사무관	
선 장 면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도 고 면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신 창 면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온 양 1 동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온 양 2 동	지방행정·시설사무관	
온 양 3 동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온 양 4 동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온 양 5 동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온 양 6 동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별표 4】

부읍장·부면장의 직급(제52조 관련)

읍·면	직 위	직 급	담 당 사 무
염치읍	염치부읍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읍총괄사무 □ 읍총무담당사무
배방읍	배방부읍장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지방농업주사	□ 읍총괄사무 □ 읍총무담당사무
송악면	송악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탕정면	탕정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음봉면	음봉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세무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둔포면	둔포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 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영인면	영인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인주면	인주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선장면	선장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도고면	도고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신창면	신창부면장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 면총괄사무 □ 면총무담당사무

【별표 5】

“별도 붙임”

【별표 6】

아산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2항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분 야(비고)
총 계	35	24		6	5				
일반직 계	33	23		6	4				
4급 소계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소장(개방형직위)
5급 소계	4	1		3					
지방의무사무관	3			3					진료(3)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1	1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6급 소계	7	6		1					
지방행정주사	5	4		1					관광개발, 정책개발(2), 농수산물유통, 법무
지방시설주사	1	1							도시계획
지방전산주사	1	1							전산홍보
7급 소계	11	9		1	1				
지방행정주사보	7	6			1				미디어홍보, 노동상담, 사회적기업 평생학습, 홍보, 스포츠마케팅, 인터넷방송국 운영
지방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지방농업주사보	1	1							친환경급식
지방보건주사보	1			1					보건진료원
지방전산주사보	1	1							전산홍보물 제작
8급 소계	5	4			1				
지방행정서기	2	2							공연기획연출, 통계
지방녹지서기	3	2			1				공원녹지(2) 수목원관리
9급 소계	5	3			2				
지방행정서기보	4	2			2				평생학습(2), 민속마을관리, 빙상장 운영
지방공업서기보	1	1							비서업무
연구직 계	2	1			1				
학예연구사	2	1			1				박물관 학예사, 과학관학예사

[별 표5]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총괄 정원 배정표

정원관리기관 / 직급·직렬별	합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 면 동
총 계	1,154	587	19	199	95	254
정 무 직	1	1				
별 정 직	6	2	0	3	1	0
일 반 직	983	526	15	141	69	232
연 구 직	2	2	0	0	0	0
지 도 직	38	0	0	38	0	0
기 능 직	124	56	4	17	25	22
정 무 직	1	1				
별 정 직	6	2	0	3	1	0
6~7급 상당	5	1	0	3	1	0
비 서 요 원	1	1				
농기계교육교관	1			1		
보건진료원	0			0		
위 생 감 시 원	2			`		
공 기 업 요 원	1				1	
8~9급 상당	1	1	0	0	0	0
문화재 관리요원	1	1				
일 반 직	983	526	15	141	69	232
3급	1	1				
지방부이사관	1	1				
4급	7	4	1	1	1	0
지방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4	2	1		1	
5급	64	31	2	8	6	17
지방행정사무관	12	10	1		1	
지방의무사무관	3			3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3	3				
지방행정·사서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사무관	0	0		0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4	11	1			2
지방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사무관	5	3			2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간호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사무관	2				2	
지방행정·농업·해양수산사무관	2					2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5					5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보건·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지방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해양수산사무관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사무관	1			1		
6급	273	153	4	47	20	49
지방행정주사	62	44	4		7	7

지방세무주사	4	4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4			4		
지방녹지주사	4	4				
지방보건주사	2	0		2		
지방간호주사	2			2		
지방보건진료주사	15			15		
지방환경주사	5	5				
지방시설주사	23	19			4	
지방행정·세무주사	10	5				5
지방행정·전산주사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21	10				11
지방행정·사서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주사	8	6				2
지방행정·농업주사	16	1		4		11
지방행정·녹지주사	1	1				
지방행정·보건주사	3	0		3		
지방행정·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시설주사	41	28			2	1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식품위생주사	1	0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	2			2		
지방보건·약무주사	1			1		
지방보건·간호주사	8			8		
지방행정·세무·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7	5			2	
지방행정·농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	4				4	
지방행정·해양수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주사	2	2				
7급	298	167	3	40	20	68
지방행정주사보	63	34	3		1	25
지방세무주사보	12	1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4	7				7
지방사서주사보	2				2	
지방공업주사보	4	3			1	
지방농업주사보	1			1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2			2		
지방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14	0		14		
지방의료기술주사보	2			2		
지방간호주사보	5			5		
지방환경주사보	4	4				
지방시설주사보	25	22			3	
지방방송통신주사보	2	2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1	6				5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5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24	11				13
지방행정·사서주사보	2				2	
지방행정·공업주사보	9	6			3	

지방행정·농업주사보	23	1		4		18
지방행정·녹지주사보	3	3				
지방행정·보건주사보	1	0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주사보	34	33			1	
지방사회복지·보건주사보	2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농업·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식품위생주사보	1	0		1		
지방보건·약무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5			5		
지방환경·시설주사보	2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10	8			2	
지방행정·녹지·시설주사보	2				2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주사보	1	1				
8급	242	135	5	36	12	54
지방행정서기	46	22	4	2		18
지방세무서기	6	6				
지방전산서기	3	2	1			
지방사회복지서기	14	6				8
지방농업서기	6			2		4
지방녹지서기	3	3				
지방보건서기	9	0		9		
지방의료기술서기	14			14		
지방간호서기	3			3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42	33			2	7
지방행정·세무서기	8	3				5
지방행정·전산서기	5	3			2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6				6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1				1	
지방행정·농업서기	10	1		3		6
지방행정·녹지서기	4	4				
지방행정·환경서기	4	4				
지방행정·시설서기	34	32			2	
지방행정·방송통신서기	2	2				
지방공업·시설서기	5	5				
지방보건·식품위생서기	1	0		1		
지방보건·약무서기	1			1		
지방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4				4	
지방행정·농업·보건·환경서기	1	1				
9급	98	35	0	9	10	44
지방행정서기보	27	9				18
지방전산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0	4				6
지방농업서기보	4			4		
지방녹지서기보	2	2				
지방보건서기보	3	0		3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10	4			1	5
지방행정·세무서기보	6	2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2				5
지방행정·사서서기보	3				3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1			2	
지방행정·농업서기보	3					3
지방행정·녹지서기보	5	2				3

지방행정·시설서기보	9	5			4	0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2	2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1			1		
연 구 직	2	2	0	0	0	0
연 구 사	2	2	0	0	0	0
기 록 연 구 사	1	1				
학 예 연 구 사	1	1				
지 도 직	38	0	0	38	0	0
지 도 관	4	0	0	4	0	0
지방농촌지도관	2			2		
지방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 도 사	34	0	0	34	0	0
지방농촌지도사	28			28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5			5		
기 능 직	124	56	4	17	25	22
기능6급	7	4	2	0	0	1
지방기계장	1	1				
지방운전장	3	2	1			
지방사무실무장	2		1			1
지방통신장	1	1				
기능7급	18	9	0	1	4	4
지방통신장	0	0				
지방전기장	1	1				
지방기계장	2	1			1	
지방운전장	11	5		1	3	2
지방사무실무장	2	2				
지방위생장	2	0				2
지방전화상담장	0	0				
기능8급	27	11	0	6	6	4
지방기계원	4	1		0	3	
지방운전원	12	6	0	3	0	3
지방위생원	2	2				0
지방사무실무원	2	0		1	1	0
지방통신원	1	1				
지방전기원	1	0		1	0	
지방간호조무원	1	0		1		
지방열관리원	1	0			1	
지방농림원	1	0				1
지방화공원	1	0			1	
지방전화상담원	0	0				
지방조무원	1	1			0	
기능9급	72	32	2	10	15	13
지방전화상담원	0	0				
지방전기원	6	4		0	2	
지방기계원	15	7		5	3	
지방열관리원	1	1				
지방운전원	22	11	1	2	5	3
지방화공원	0				0	
지방농림원	0	0				
지방위생원	6	1		0	1	4
지방사무실무원	12	3	1	2	3	3
지방방호원	3	3				
지방간호조무원	1			1		
지방조무원	6	2			1	3

◉ 아산시고시 제2012 - 230호

아산득산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산득산농공단지의 지정(변경)승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게재는 생략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아 산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득산농공단지

2.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42 일원

나. 면적 : 215,685㎡

3.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산업입지를 제공

4.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기정)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변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22번길 15-14

나. 사업시행자 : 기정) 아산시장

변경)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대표이사 카키시타카즈야

※ 아산 득산농공단지 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자 변경

5. 농공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1987년 ~ 1990년

변경) 2012년 ~ 2013년

나. 개발방법(변경) : 기정) 공영개발

변경) 실수요자개발

6. 주요 유치업종(변경)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 오폐수발생량이 큰 '종이(17)' 업종을 주요유치업종에서 제외

구분	유 치 업 종		비고
	기정	변경	
제조업 (C)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17)	-	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22)	
	비금속 광물제품(23)	비금속 광물제품(23)	
	금속가공제품(25)	금속가공제품(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6)	
	전기장비(28)	전기장비(28)	
	기타 기계 및 장비(29)	기타 기계 및 장비(29)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자동차 및 트레일러(30)	

나. 업종배치계획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3,451	증) 3,263	166,714	100.0	
종이	4,047	감) 4,047	-	-	
화학물질	18,659	-	18,659	11.2	
의료용물질	5,022	-	5,022	3.0	
고무제품	12,869	-	12,869	7.7	
비금속	12,484	증) 4,047	16,531	9.9	
금속가공제품	38,042	증) 3,263	41,305	24.8	
전자부품	17,413	-	17,413	10.4	
전기장비	20,946	-	20,946	12.6	
기타기계	18,822	-	18,822	11.3	
자동차	15,147	-	15,147	9.1	

7.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15,685	-	215,685	100.0	
산업시설용지	163,451	증) 3,263	166,714	77.3	
지원시설용지	11,545	감) 3,566	7,979	3.7	
공공시설용지	40,689	증) 303	40,992	19.0	
도로	17,594	-	17,594	8.2	
녹지	23,095	증) 303	23,398	10.8	

▫ 세부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5,685	-	215,685	100.0	
산업시설용지	163,451	증) 3,263	166,714	77.3	
지원시설용지	11,545	감) 3,566	7,979	3.7	
지원시설	2,941	-	2,941	1.3	
주차장	1,653	-	1,653	0.8	
오폐수처리장	6,951	감) 3,566	3,385	1.6	
공공시설용지	40,689	증) 303	40,992	19.0	
도로	17,594	-	17,594	8.2	
녹지	23,095	증) 303	23,398	10.8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 총 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661	17,594	-	-	-	8	1,661	17,594	-	-	-
중로	1	397	5,975	-	-	-	1	397	5,975	-	-	-
소로	7	1,264	11,619	-	-	-	7	1,264	11,619	-	-	-

- 도 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계	-	-	-	-	-	1,661	17,594	-	-	-	-
기정	중로	3	1	15	집산도로	397	5,975	구역경계 북측	농공단지 남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	9	국지도로	209	1,904	중로 2-1	농공단지 서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9	국지도로	126	1,093	중로 2-1	농공단지 동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9	국지도로	172	1,616	중로 2-1	농공단지 서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9	국지도로	145	1,372	중로 2-1	농공단지 동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202	1,875	중로 2-1	농공단지 서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6	9	국지도로	109	1,025	중로 2-1	농공단지 동측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7	9	국지도로	301	2,734	농공단지 남동측	농공단지 남서측	일반도로	

▫ 녹 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녹지	국도45호선변, 농공단지 외곽경계부	23,095	증) 303	23,398	

▫ 오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 경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시설 용지 내	6,951	3,385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아산시 고시 제 2012 - 231호

아산득산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아산득산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041-540-2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아 산 시 장

1. 농공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아산득산농공단지

2.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주 소 : 기정)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변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122번길 15-14

나. 사업시행자 : 기정) 아산시장
변경) 태평양에어콘트롤공업(주) 대표이사 카키시타카즈야
※ 아산 득산농공단지 유휴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자 변경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 적 : 현재 득산농공단지는 생산환경변화 및 '종이(17)' 업종 공장이전 등에 따라 사실상 오폐수처리시설 확장이 필요치 않으므로 시설 확장을 고려한 일부 지원시설용지(나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고, 폐수발생량이 큰 '종이(17)' 업종을 주요유치업종에서 제외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 증대 및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업시행지 : 아산시 득산동 312-42 일원(득산농공단지 지원시설용지 내)

다. 면 적 : 기정) 215,685㎡
변경) 4,227㎡(금회 사업시행)

라. 시 행 방 법 : 당초) 공영개발방식
변경) 실수요자 개발

4. 농공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42 일원

나. 면 적 : 215,685㎡(금회 사업시행 : 4,227㎡)

5. 농공단지의 개발방법 및 개발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1987년 ~ 1990년
변경) 2012년 ~ 2013년

나. 개발방법(변경) : 기정) 공영개발
변경) 실수요자 개발

6.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없음)

아산시 고시 제2012 - 232호

동화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622-1번지 동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일

아 산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아산 동화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3. 사 업 비 : 20,038백만원(국비1,400 도비180 시비420 민자18,038)
4. 주요 사업내용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동화리 622-1번지
   나. 규 모 : 88,163㎡(가구수 : 53가구)
   다. 사업추진방식 : 입주자주도형
   라. 기 반 시 설
      - 도 로 : 1,162m(폭 8.5m)
      - 상 수 도 : 관정(120㎥/일), 배수지(90㎥/일), 관로 L=2,042m
      - 하 수 도 : 관로 L=1,140m
      - 공공이용시설 : 마을커뮤니티센터 1개소, 경비실 1개소, 경관녹지 등
      - 전 기 · 통 신 : 가로등, 전력지중화공사 등
      - 주 택 건 축 : 53동
5. 사 업 시 행 자 : 아산시장
6.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2

7. 함께 고시하는 사항

-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내역

내 용	승 인 내 역	비 고
대지면적	88,163㎡ (주택부지 : 61,483㎡, 도로·주차장·녹지부지 : 26,230㎡, 부대복리시설지 : 450㎡)	
사업규모	단독주택단지, 53동, 53세대	
사 업 비	20,038백만원	
사업기간	2010. 05. ~ 2012. 03	주택건축 포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건설방재과(☏041-540-2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제 2012-233호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 같은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하 천 명		율지천	하천의 종류	지방하천
하 천 의 위 치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947-1 번지		
점 용 면 적		375㎡		
점 용 목 적		리도201호선 도로의 확폭 및 선형변경에 따른 진·출입로		
설 치 공 작 물		암거(4.0*2.0*1련) L=14m		
점 용 기 간		2012. 11. 15. ~ 2016. 12. 31.		
점용자	주 소	아산시 음봉면 산동로 246-70		
	성 명	CNK테크 대표 조창상		

2012. 11. 15.

아 산 시 장

고 시 제 2012-235호

하천점용 허가에 관한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 같은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하 천 명		신인천	하천의 종류	지방하천
하 천 의 위 치		아산시 장존동 574-1 번지		
점 용 면 적		65㎡(영구)		
점 용 목 적		동·식물관련시설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설 치 공 작 물		암거(4.0*1.5)L=4m, 콘크리트포장A=38㎡(t=20cm)		
점 용 기 간		2012. 11. 19. ~ 2016. 12. 31.		
점용자	주 소	아산시 풍기동440번지 동일하이빌@103/1903		
	성 명	김 신 혜		

2012. 11. 19.

아 산 시 장

고 시

아산시 고시 2012 - 238호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 . 11 .

아 산 시 장

1. 기 준 점 명 : 지적도근점(24점)
2. 소 재 지 :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산47번지 일원
3. 측량년월일 : 2012년 11월 06일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5. 측량 기준점 명칭, 번호 및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 별첨

측량기준점 명칭.번호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측량기준점 명칭. 번호	평면직각 종횡선수치	
	X(m)	Y(m)		X(m)	Y(m)
지적도근점 10877	353389.31	200524.86	지적도근점 10878	353439.80	200505.53
지적도근점 10879	353503.40	200412.79	지적도근점 10880	353608.55	200371.15
지적도근점 10881	353687.62	200371.45	지적도근점 10882	353748.93	200330.47
지적도근점 10883	353806.48	200368.24	지적도근점 10884	353939.11	200370.85
지적도근점 10885	353998.58	200386.12	지적도근점 10886	354111.94	200408.94
지적도근점 10887	354126.29	200323.97	지적도근점 10888	354194.87	200407.71
지적도근점 10889	354267.23	200392.85	지적도근점 10890	354339.29	200374.50
지적도근점 10891	354459.86	200296.09	지적도근점 10892	354536.52	200247.35
지적도근점 10893	354608.65	200211.61	지적도근점 10894	354819.30	200215.44
지적도근점 10895	354928.04	200232.53	지적도근점 10896	355135.28	200200.10
지적도근점 10897	355167.53	200120.30	지적도근점 10898	355409.37	200029.74
지적도근점 10899	355698.31	199977.41	지적도근점 10900	355833.33	199968.33

아산시 공고 제2012 - 152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 년 11 월 15 일

아 산 시 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2012년도 2기분)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2. 11. 16. ~ 2012. 11. 30.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아산시청 환경보전과(041-540-23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지번호	시설물명	납부자	생년월일	금액	송달주소
122001890	(주)온양팔래스호텔	케이비부동산신탁(주)	110111	1,783,21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616	간이역외2	주은선	680315	40,64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430	거북이발관외2	박태경	330513	42,3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097	구세군 모산교회	모산어린이집	110122	12,85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341	길성이식당	최명숙	581224	7,49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1812	다도횟집 외 3	서충원	641009	49,44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346	당구광장	배일명	620720	86,62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980	로얄당구클럽외2	조원배	521215	12,080	대전광역시 동구
122000701	메가세이프티	정수원	521120	7,650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22002399	메디포스(이레메디컬)	석창주	880331	41,55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172	모산제일교회	모산제일교회	351129	18,95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339	미래어린이집	이동소	610107	17,560	충청북도 청원군
122002908	박물관	아산시장	312830	68,220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122001269	베스토아	송종명	280804	5,47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122001567	봄신경정신과 외	원상희	470513	4,11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410	삼성디지털플라자 외	강경식	630515	30,06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0095	수청감리교회	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	110122	5,08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2184	신용종합장식외5	서형모	431215	71,78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2412	신정교회	(재)기독교대한감리회	110122	9,5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2929	신축	김정희	350210	10,540	경기도 평택시
122001505	아라한방한우사랑	김문순	410715	34,23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946	아이조아 어린이집	최연실	680229	20,610	경기도 평택시
122002105	에이스빌딩	(주)신진종합건설	312813	78,4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2019	여와노래클럽 외	김진경	580917	42,230	서울특별시 도봉구
122002489	예일어린이집	윤경자	530104	86,5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334	옛날황토화로구이	이상구	581003	25,20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0491	우리가정의학과	김신희	730930	14,92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1432	은지스튜디오 외3	이선봉	331224	6,7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858	이노센트	이종대	751211	10,29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1054	인주의용소방대	아산시장	312830	13,3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179	장수왕족발 외6	조옥환	380811	65,3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1504	정해일식외1	김해강	410523	53,25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395	참나무곰탕	금오양돈영농조합	164871	23,47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525	참숯바베큐치킨 외1	김삼명	430305	19,1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400	천인아웃소싱	김영창	621003	16,9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1408	축산물유통센타	김천만	310926	101,44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2806	충청마트	이석룡	580623	29,46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1388	태평할인마트	학교법인중부학원	160131	12,53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2749	파티안/엘르	원강희	560713	8,54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499	패밀리마트/패밀리마	?邕鑽?	40112	7,503	0충청남도 아산시
122001773	폴햄/스칼렛헤어필	맹관재	610518	24,54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674	프린스모텔	윤만순	420821	38,69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22000909	하나빌	손창근	570807	28,280	강원도 동해시
122002847	하나유통	이경란	730220	69,450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122002268	하늘소	조문현	550526	200,16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1364	하얀민들레	노혜선	791229	88,99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22000180	호서카센타	박동혁	381015	15,26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122000453	홈훼미리마트	박정윤	680214	117,20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0752	홍익종합학원	임재복	630730	8,120	충청남도 아산시
122002364	회마트외3	심광진	680403	33,250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공고 제 2012 - 153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열람 공고

아산시 장존동 425번지 일원에 대하여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입안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 월 21일

아 산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공청사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장존동 425번지 일원	5,944	감)87	5,857	2012.2.15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시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공청사	·공공청사 변경 - 면적 : 5,944㎡ → 5,857㎡ (감 87㎡)	· 온양6동 주민들에게 각종 행정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고하고자 온양6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2. 열람기간 : 2012. 11. 21. ~ 2012. 12. 12.

3.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041-540-2940)

4. 관계도면 : 열람장소 비치

아산시 공고 제2012 - 1531호

「아산탕정지구 중도위 조건부 의결내용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토지 등의 출입 공고

아산탕정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이행을 위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

아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 : 아산시장
2. 사업의 종류(명칭) : 아산탕정지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어린이공원) 사업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탕정면 매곡리 일원

   ※ 붙임 : 출입할 토지의 구역(내역) 현황 참조
4. 출 입 목 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자료 조사
5. 출 입 기 간 : 2012. 11. 22. ~ 조사 완료시까지
6. 출 입 자 : 측량·조사관계자 등
7. 기 타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청 신도시지원과 (☎041-540-2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할 토지의 구역(내역) 현황

소 재 지		편 입 지 번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54-1, 154-2, 160, 162-1, 163-2, 163, 1003, 1002-2, 589-1, 589-3, 589-4, 589-5, 590-4, 592, 594-2, 594-7, 594-8, 595-1, 595-2, 1068, 639-4, 664, 665-1, 665-2, 665-3, 665-4, 665-5, 665-6, 674-7, 674-16, 674-18,

공고 제 2012 - 1537 호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2. 11. 19.

아 산 시 장

□ **편입토지조서 및 현황**

위 치	편입면적 (㎡)	소 유 자
3 필 지		성 명
방축동 592-5	22.0	박희성, 김양겸
방축동 592-6	771.0	박희성, 김양겸
방축동 592-11	197.0	박희성, 김양겸, 김병진
합 계	990.0	

○ 도로길이 : 124.4m

○ 도로너비 : 8.0m

□ **설계도서 및 도로대장** : 건축과 비치

아산시 공고 제 2012 - 1542호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고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2. 11. .
제 출 자 : 아 산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 주요내용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예 산 액	증 감	%
총 계	794,500	768,200	26,300	3.4
일 반 회 계	676,000	614,000	62,000	10.1
특 별 회 계	118,500	154,200	△35,700	△23.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출일자 : 2012. 11. .
제 출 자 : 아 산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을 요청함

□ 주요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증 감	%
총 계	21,396	15,368	6,028	39.2
채무상환기금	2,970	2,807	163	5.8
통합관리기금	275	233	42	18.0
식품진흥기금	362	366	△4	△1.1
자 활 기 금	593	381	212	55.6
노인복지기금	128	137	△9	△6.6
여성발전기금	547	286	261	91.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927	1,200	727	60.6
체육진흥기금	155	146	9	6.2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1,351	1,348	3	0.2
농어업발전기금	8,330	4,040	4,290	106.2
재난관리기금	4,758	4,424	334	7.6

아산시 공고 제 2012 - 1549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남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아산시 용화동 산45-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화남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2년 11 월 일

아 산 시 장

1. 건 명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화남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2.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용화남산 지구단위계획	아산시 용화동 산45-1번지 일원	163,830	-	163,830	충고 제2010-60호 (2010.3.02)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493)

다. 관계도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의견제출

-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민열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산시(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1626)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아산시 공고 제 2012 - 1552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등 반송건 공시 송달 공고

귀하께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와『아산시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처리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 통지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11. 21.

아 산 시 장

1. 제 목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 5건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 8건
   3)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 통지 : 4건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24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4. 처분대상

대 상 지 주 소				위반내용	반송 사유	비고
연번	이름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1	박노을	충남 아산시 시장남길 24(온천동)	320602-1******	무단증축	이사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김미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2,204동 502호(백현동,백현마을)	670101-2******	무단증축	폐문부재	
3	신정훈	충남 아산시 문화리ㅗ 355,107동 1204호(모종동,모종이편한세상)	720226-1******	무단증축	폐문부재	
4	민유미	서울 은평구 녹번로7길 17-4,102호(녹번동,정송래미안빌)	790129-2******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폐문부재	
5	김찬용	서울 은평구 녹번로7길 17-4,102호(녹번동,정송래미안빌)	750317-1******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폐문부재	

대 상 지 주 소				위반내용	반송 사유	비고
연번	이름	주소	주민(법인) 등록번호			
6	하동례	충남 아산시 순천향로 649(법곡동)	451005-2******	무단신축	수취인불명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7	천정열	충남 아산시 배미동 143	650320-1******	무단신축	수취인불명	
8	유신전자공업(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54-2	134511-0******	무단공작물 축조	이사감	
9	(주)비엔디	충남 아산시 초사동 74	164811-0******	가설연장신고 미필	이사감	
10	오진태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3-16	581115-1******	무단증축	폐문부재	
11	홍기표	충남 아산시 신정로 675(방축동)	591121-1******	무단신축	폐문부재	
12	김신자	충남 아산시 신창면 행목로 100-14	510602-2******	무단증축		
13	김동석	충남 아산시 고불로 665, 302동 908호(좌부동,초원설화타운)	601214-1******	무단증축		
14	문보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세출리 235-2	510622-2******	무단증축	수취인불명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 압류 통지
15	최평호	충남 아산시 용화동 368-5	570528-1******	무단증축	이사감	
16	천정열	충남 아산시 배미동 143	650320-1******	무단신축	주소불명	
17	이충구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정길 377-16	450417-1******	무단신축	이사감	

5. 공고기간 : 2012.11.21. ~ 2012.12.11. (20일간)

6.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의 고지서 발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1-540-2856)

충청남도 공고 제2012-1118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업 소 명 : (주)네오그린텍
2. 대 표 자 : 양희옥
3.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석문길 121-49
4. 업 종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 충남-151호
6. 등록일자 : 2012년 11월 14일

2012년 11월 14일

충청남도지사